

# 「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1. 21 (월) 김영해 의원 외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0(수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8.02.20) 상정·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평창군의회 의원 김영해)

가. 지역 축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,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원대상(안 제3조)
-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
- 지원내용(안 제4조)
 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 지원
- 지원신청 및 지원(안 제5조 내지 제6조)
  - 지원신청인은 생산송아지 생후 6개월 이내에 평창군수에게 제출
  - 평창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
- 환수(안 제7조)
  -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한우생산기반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한우생산 및 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평창군내에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직접 송아지를 사육하거나 관내에 매매할 경우 일정기간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며,
- 지원신청은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,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
- 국가간 FTA 체결로 인하여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특히 농업, 축산업분야의 경쟁력확보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축산농가에게 축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음.

다. 결과적으로,

- 축산농가의 자가사육을 유도함으로써 한우의 사육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평창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
-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, 자구용법 등 조례구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, 집행기관 의견을 감안하여 심의함이 바람직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### 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